

「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1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0월 20일

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행정안전국장 김 용 보

나. 제안이유

-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이 신설(2021. 10. 19.)됨에 따라 2023. 1. 1. 시행을 위해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(안 제1조)
-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 선정(안 제2조~제6조)
-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(안 제7조)
-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운용 (안 제8조~제24조)
- 부칙 :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 등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2023년도 본예산 반영(사업 준비 비용 1억원)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 신설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행정안전부의 참고 조례안(표준 조례안)을 기초로 만들어진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,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가 정착되면 시 재정수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.
- 향후 집행부에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답례품 선정 위원회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, 특혜 논란이 없도록 공정한 절차를 거쳐 답례품과 공급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